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17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차규근・김선민・김재원

강경숙 • 정춘생 • 황운하

서왕진 • 이해민 • 신장식

백선희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음.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 도록 하고 있는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음.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 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음.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 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 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 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임.

따라서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 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를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회가 승인을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선포를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	<u>국회의 승인을 얻</u>		
告)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어야 국회가 승인을 아		
	니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선		
	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